

尹 탄핵심판, 16명의 증인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광준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중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 국회 측 “계엄은 헌법 파괴 행위”...尹 측 “야당 입법폭거 계엄 정당”

### 국회 측, 부정선거 음모론 철폐를 윤 측, 대통령 유일 견제수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끝났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합법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이날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그동안 재판 시작전에 헌재에 출석하던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을 하려고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늦게 출발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어김없이 공방을 펼쳤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12월 3일 심야에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면서 “심판정에서는 내란 프레임에 빠지고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던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폐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부정선

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까짜 투표용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를 판단해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고 했다. 현재 재판관 출신인 김이수 변호사는 “공자가 말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오늘 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헌법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라면서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신뢰, 모두를 흔들어 놓았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현재 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과오를 시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과 궤변으로 피해자인 척하며 일부 지지층을 향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헌법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

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할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적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으로 전시·사변, 물리적 폭력 상황 등을 상정하기 쉽지만 ‘연성(軟性)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가 마비됐고 국회의 입법 폭주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정부가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이다. 현재 법정 태도 논란의 중심에 선 김계리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

는 등 범법, 대공수사를 무력화했다”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떤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지 모른다”며 안보 위협을 강조하면서 계엄 선포 당시를 비상사태라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월담하는 동영상에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하면서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 취직의 주장을 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유일한 견제수단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도태우 변호사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어느 쪽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견제·감독하지 못해 자제적인 정화 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소불위 선관위를 국가적으로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尹 탄핵 심판 73일만에 변론 종결... 11차례 증인 16명

### 탄핵심판 주요 일지

첫 증인 김용현 주요 쟁점 전부 부인  
홍장원 “짜 다 잡아들이라” 지시 증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됐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7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 정형식 재판관은 주심을 맡아 지난해 12월 1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후 총 11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변론기일에서는 12·3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총 16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4차 변론이 열린 지난해 23일 첫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섰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이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증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직접 “포고령 1호가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를 기억하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한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열린 5차 변론 기일에서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언대에 섰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핵심 인사들이던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본인들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홍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짜 다 잡아들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하루 종일 방식의 집중심리가 시작된 6차 변론 기일에는 광준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도 이날 증인으로 나서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의사당과 의원회관 봉쇄 및 확보”라고 말했다. 11일 열린 7차 변론 기일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솔직히 온몸을 바쳐 막아야 할 대상은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8차 변론기일(13일)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반면 같은 날 헌재가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차 변론기일(20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모두 격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제적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비상계엄의 절차의 위법성을 증언했다. 2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마지막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말을 아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헌법 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헌재가 인용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이날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에 통보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중 정계선-조한장 후보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최 대행 측과 국회 측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의 유효성과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 청

구 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헌재가 최 대행의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가 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 구성 변경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에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마 후보자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회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도.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제 24 기 결산공고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잔액	계	잔액
1. 유동자산	18,012,630,760		18,012,630,760
(1) 당해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11,118,910,487		
2. 단기금융상품	6,000,000,000		
3. 매출채권	773,590,316		
4. 미수금	73,809,209		
5. 미수금	7,983,688		
6. 선입금	36,392,690		
II. 비유동자산	55,254,445,261		55,254,445,261
(1) 유동자산			3,039,748,493
1. 국유물	3,058,470,000		
2. 가산채권	-467,571,160		
3. 가산채무	2,519,000,000		
4. 가산채권-계	-2,519,000,000		
5. 가산채무-계	1,049,389,746		
6. 가산채권-계	-944,801,684		
7. 가산채무	2,464,584,369		
8. 가산채권-계	-2,040,322,778		
9. 가산채무-계	-		
(2) 비유동자산			52,164,696,768
1. 유가증권	60,422,333,408		
2. 유가증권	-8,257,636,640		
(3) 기타비유동자산	50,000,000		50,000,000
자산총계			73,267,076,021
부채총계			2,341,732,296
1. 유동부채			76,614,075
2. 유동부채	18,862,000		
3. 유동부채-계	343,935,098		
4. 유동부채	22,248,485		
5. 유동부채-계	1,880,072,637		
6. 유동부채-계	94,574,961		
7. 유동부채-계	-94,574,961		
8. 유동부채-계			
9. 유동부채-계			
10. 유동부채-계			
11. 유동부채-계			
12. 유동부채-계			
13. 유동부채-계			
14. 유동부채-계			
15. 유동부채-계			
16. 유동부채-계			
17. 유동부채-계			
18. 유동부채-계			
19. 유동부채-계			
20. 유동부채-계			
21. 유동부채-계			
22. 유동부채-계			
23. 유동부채-계			
24. 유동부채-계			
25. 유동부채-계			
26. 유동부채-계			
27. 유동부채-계			
28. 유동부채-계			
29. 유동부채-계			
30. 유동부채-계			
31. 유동부채-계			
32. 유동부채-계			
33. 유동부채-계			
34. 유동부채-계			
35. 유동부채-계			
36. 유동부채-계			
37. 유동부채-계			
38. 유동부채-계			
39. 유동부채-계			
40. 유동부채-계			
41. 유동부채-계			
42. 유동부채-계			
43. 유동부채-계			
44. 유동부채-계			
45. 유동부채-계			
46. 유동부채-계			
47. 유동부채-계			
48. 유동부채-계			
49. 유동부채-계			
50. 유동부채-계			
51. 유동부채-계			
52. 유동부채-계			
53. 유동부채-계			
54. 유동부채-계			
55. 유동부채-계			
56. 유동부채-계			
57. 유동부채-계			
58. 유동부채-계			
59. 유동부채-계			
60. 유동부채-계			
61. 유동부채-계			
62. 유동부채-계			
63. 유동부채-계			
64. 유동부채-계			
65. 유동부채-계			
66. 유동부채-계			
67. 유동부채-계			
68. 유동부채-계			
69. 유동부채-계			
70. 유동부채-계			
71. 유동부채-계			
72. 유동부채-계			
73. 유동부채-계			
74. 유동부채-계			
75. 유동부채-계			
76. 유동부채-계			
77. 유동부채-계			
78. 유동부채-계			
79. 유동부채-계			
80. 유동부채-계			
81. 유동부채-계			
82. 유동부채-계			
83. 유동부채-계			
84. 유동부채-계			
85. 유동부채-계			
86. 유동부채-계			
87. 유동부채-계			
88. 유동부채-계			
89. 유동부채-계			
90. 유동부채-계			
91. 유동부채-계			
92. 유동부채-계			
93. 유동부채-계			
94. 유동부채-계			
95. 유동부채-계			
96. 유동부채-계			
97. 유동부채-계			
98. 유동부채-계			
99. 유동부채-계			
100. 유동부채-계			
부채총계			2,341,732,296
자본총계			70,925,343,725
1. 자본총계			73,267,076,021
2. 자본총계			
3. 자본총계			
4. 자본총계			
5. 자본총계			
6. 자본총계			
7. 자본총계			
8. 자본총계			
9. 자본총계			
10. 자본총계			
11. 자본총계			
12. 자본총계			
13. 자본총계			
14. 자본총계			
15. 자본총계			
16. 자본총계			
17. 자본총계			
18. 자본총계			
19. 자본총계			
20. 자본총계			
21. 자본총계			
22. 자본총계			
23. 자본총계			
24. 자본총계			
25. 자본총계			
26. 자본총계			
27. 자본총계			
28. 자본총계			
29. 자본총계			
30. 자본총계			
31. 자본총계			
32. 자본총계			
33. 자본총계			
34. 자본총계			
35. 자본총계			
36. 자본총계			
37. 자본총계			
38. 자본총계			
39. 자본총계			
40. 자본총계			
41. 자본총계			
42. 자본총계			
43. 자본총계			
44. 자본총계			
45. 자본총계			
46. 자본총계			
47. 자본총계			
48. 자본총계			
49. 자본총계			
50. 자본총계			
51. 자본총계			
52. 자본총계			
53. 자본총계			
54. 자본총계			
55. 자본총계			
56. 자본총계			
57. 자본총계			
58. 자본총계			
59. 자본총계			
60. 자본총계			
61. 자본총계			
62. 자본총계			
63. 자본총계			
64. 자본총계			
65. 자본총계			
66. 자본총계			
67. 자본총계			
68. 자본총계			
69. 자본총계			
70. 자본총계			
71. 자본총계			
72. 자본총계			
73. 자본총계			
74. 자본총계			
75. 자본총계			
76. 자본총계			
77. 자본총계			
78. 자본총계			
79. 자본총계			
80. 자본총계			
81. 자본총계			
82. 자본총계			
83. 자본총계			
84. 자본총계			
85. 자본총계			
86. 자본총계			
87. 자본총계			
88. 자본총계			
89. 자본총계			
90. 자본총계			
91. 자본총계			
92. 자본총계			
93. 자본총계			
94. 자본총계			
95. 자본총계			
96. 자본총계			
97. 자본총계			
98. 자본총계			
99. 자본총계			
100. 자본총계			

### 제 22 기 결산공고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단